「평창군 농업교육 지원 및 농업교육관 운영 조례안」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O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0년 10월 13일, 평창군수 제출

O 회부일자 : 2020년 10월 19일 회부

O 상정일자: 제260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
(2020년 10월 19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기술지원과)

가. 제안이유

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과「농촌진흥법」에 따라 우리군 농업인의 전문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고, 우리군 농산물 소비자와우리군으로 귀농.귀산.귀촌을 하려는 국민에게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고, 농업기술센터내에 설치되는 농업인교육관의 운영 방안을 갖추어 우리군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농업교육 지원 및 농업교육관 운영 조례 목적,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O 군수의 책무(안 제3조)
- O 농업교육 대상 및 선발, 강사 위촉 및 수당, 경비의 지원, 교육실적

관리 등 (안 제4조 ~ 제12조)

O 농업교육관의 운영 및 관리 등 (안 제13조 ~ 제19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이용섭)

O 본 조례안은

농업교육 지원과 농업기술센터 내(여만리 40)에 설치되는 농업교육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취지입니다.

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19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농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노력의 군수책무 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는 농업교육 대상 및 선발, 강사 위촉 안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는 농업교육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.

O 「농업진흥법」상 "교육훈련사업의 지속적 실시"와

"교육훈련과정을 농업인 역량개발에 적합하도록 연구·개선해야 함"을 지자체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,

본 조례안은 이를 근거로 한 위임사항을 자치법규로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- 5. 토론요지 : 없음

- 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- 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농업교육 지원 및 농업교육관 운영 조례안 1부.

평창군 농업교육 지원 및 농업교육관 운영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평창군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할 정예 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업교육 지원 및 평창군 농업교육관 운영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농업교육"이란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할 정예 인력 육성과 농촌생활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 는 교육을 말한다.
 - 2. "평창군 농업교육관"(이하 "교육관"이라 한다)이란 평창군 평창읍 여만 길 40(평창군 농업기술센터 내)에 위치한 농업 교육 전용 건물을 말한다.
- 제3조(군수의 책무) ① 평창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 지역농업 발전과 농·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농업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.
 - ② 군수는 평창군(이하 "군"이라 한다) 농업인과 군민 등이 농업에 필요한 기술과 농촌 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.
- **제4조(농업교육)** ① 군수는 교육 과정의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,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한다. 이 경우, 수요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.

- ② 농업교육은 이론교육과 실습(현장)교육을 병행하여 교육관에서 진행하되,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와 협의 된 타부서 및 기관의 교육을 포함할 수 있고, 필요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.
- **제5조(교육생 선발)** ① 군수는 교육과정별 교육생 선발 및 학사규정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.
 -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세부계획을 군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공고해야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신청자는 해당 교육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군수는 교육대상을 결정한 후,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.
 - ④ 제3항에 따라 교육이 확정된 사람은 기일 안에 교육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, 불이행시에는 교육생 선발이 취소될 수 있다.
- **제6조(강사의 위촉)** ①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강사를 위촉하여 농업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강사는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 - 1.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
 - 2. 농업업무 담당 공무원
 - 3. 그 밖에 교육과정에 맞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**제7조(강사수당 등의 지급)** 군수는 교육에 위촉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8조(경비의 지원)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

- 있으며, 그 일부를 교육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.
- 1. 식비(1일 4시간 이상의 교육에만 한정한다)
- 2. 현장학습 및 연수 등에 따른 여비 및 임차료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
- 3. 교육에 필요한 실습재료 및 교재제작 · 구입, 재료비 등
- **제9조(교육생 연수)** 군수는 교육의 목적 달성과 성과 향상을 위하여 국내· 외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.
- 제10조(교육의 위탁) 군수는 교육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기자재 확보 및 숙박이 필요할 경우 이를 갖춘 전문 교육기관 또는 대행업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, 위탁을 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업체는 성평등한 교육 운영에 관한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1조(교육이수, 교육이수자 우대 및 관리) ① 군수는 교육과정별 일정시 간 이상의 교육이 인정된 교육생에게 교육 이수를 증빙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자는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농림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.
 -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자 중 교육운영에 공헌하거나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교육생을 선발하여 시상할 수 있다.
 -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자의 자료는 최대 5년까지 관리하고, 증명서발급의 자료로 활용한다.
- 제12조(교육 훈련사업) ① 군수는 교육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훈련 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- ② 군수는 효율적이고 쾌적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 훈련사업 실시에 필요한 교육장 시설 및 교육장비 등의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있다.
- 제13조(교육관의 사용 및 대여)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농업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 교육관을 농업교육 외의 목적으로 대여 할 수 있다.
 - ② 교육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목적과 일시 등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허가내용을 변경 할 경우 또한 같다.
- 제14조(사용의 제한)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교육관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.
 - 1.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
 - 2. 교육관의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, 망실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
 - 3. 그 밖에 교육관의 유지 관리상 또는 공익상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 고 판단될 때
- 제15조(사용허가의 취소)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교육관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.
 - 1. 교육관 사용 중에 제14조 각 호에 해당하는 때
 - 2. 천재지변 등,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교육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
 - 3.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미납할 때
 - 4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
- 제16조(사용시간 및 사용료) ①교육관의 1회 사용시간은 4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며 사용시간 중 일부만 이용한 때에도 1회 사용으로

본다.

기준	사용시간	비고
오전	08:00 ~ 13:00	
오후	13:00 ~ 17:00	
야간	18:00 ~ 22:00	

② 교육관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고, 사용료는 납입 고지서에 의하여 수납한다.

제17조(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) ① 군에서 교육관을 사용을 하는 경우 사용 료를 전액 감면 한다.

- ② 평창군 농업인학습단체, 품목별농업인연구회, 농어업회의소에서 각 단체 고유의 목적을 위하여 교육관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전액 감면 한다.
- ③ 군내 농업협동조합, 축산협동조합, 산림조합 등에서 농업교육을 목적으로 교육관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전액 감면 한다.

제18조(사용료의 반환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.

- 1.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교육관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: 전액 반환
- 2.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관의 사용이 취소·정지된 경우 : 전 액 반화
- 3. 허가사용일 10일 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: 전액 반환
- 4. 허가사용일 5일 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하고 군수가 그 신청에 상당

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: 반액 반환

제1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평창군 농업교육관 사용료(제16조제2항 관련)

(단위 : 원)

구 분 시설명	단위	사용료	비고
대 강 당 오후	오전	50,000	1. 1회 단가임 2. 토요일의 오후와 야간 및 공휴일의 사용에 대하여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함.
	오후	50,000	
	야간	100,000	
조리실습실	오전	50,000	1일(09:00 ~ 21:00)
	오후	50,000	
	야간	100,000	
소회의실	오전	20,000	토요일의 오후와 야간 및 공휴일의 사용에 대하여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함.
	오후	20,000	
	야간	40,000	